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튼튼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배포시	배포	2023. 8. 3. (목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	책임자	부국장	박정은	(02-3145-8140)
		담당자	선 임	차정은	(02-3145-8137)
			조사역	조준원	(02-3145-8139)

고수익 보장,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**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, 사기일** 가능성이 높습니다

-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-

■ 소비자경보 2023-19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소비자경보 내용

◆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표적인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

- ① **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**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**현혹되지 마세요**
- ② **저가 매수를 권유**하며 **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**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**더 큰 손실**을 볼 수 있습니다
- ③ **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**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**가격이 크게 변동**할 수 있어 **가격이 급락**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
- ④ **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**을 사칭하거나 **공문**을 제시하며 **투자를 권유**하거나 **입금을 요구**하는 경우 **사기일 가능성**이 높습니다
- ⑤ 자체 개발한 **전자지갑 설치**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**메일**로 **전자지갑을 연결**하라고 하는 경우 **해킹에 노출될 위험**이 높습니다
- ⑥ **유명인** 또는 **유명업체**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**고수익**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**불법 유사수신**이므로 **현혹되지 마세요**

I.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*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하여 6.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중

* '24.7.19.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 예정

- 「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」 개설('23.6.1.)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됨*

* '23.6.1.~7.30. 기간 중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

-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,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

- 이에,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여 신고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

- 한편,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할 예정

《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이용방법》

- ① **(인터넷 접수)*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「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」* 란에 투자사기 사건을 신고

* 홈페이지 「민원·신고」 → 「불법금융신고센터」 → 「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」

- ② **(유선 상담)** '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' 전용 상담 회선(☎1332-9번-2번)* 으로 연결

* **(9번)** 불법리딩방 및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제보·신고, **(2번)**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제보·신고

II.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

①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

-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*가 특정 가상자산을 ‘프라이빗 세일**’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

*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에게 금융투자상품 자문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

** 거래소 등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것



- 가상자산 매수 후,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(락업)시켜야 한다고 하며 매도 및 출금 정지



- 정해진 락업 해제일이 다가오면 락업 연장을 유도하거나 락업 해제를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여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함



- 락업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손실 발생

프라이빗 세일물량 매수 후 투자손실 발생 사례

A씨는 B업체의 투자 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해 둔 가상자산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C코인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다. 업체는 코인 가격안정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재단에서 3개월간 코인거래를 제한하는 대신, 제한기간이 지나면 크게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. 하지만, 거래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재단 측 사정이라며 추가로 2개월간 거래를 추가 제한하는 등 매도가 미뤄지면서 그 사이 코인가격은 1/10로 급락하였다.



②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

-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재단이 상장 전 가상자산 스테이킹* 업체를 통해 다단계 형태**로 가상자산 투자자 모집

*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

** 가상자산 매수 후 일정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며, 추천인 수에 따라 회원 등급을 구분하여 이자를 차등 지급



- 동 재단은 가상자산 상장 후 '마켓메이킹' 업체를 통해 차명지갑 및 트레이딩 봇을 이용하여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 조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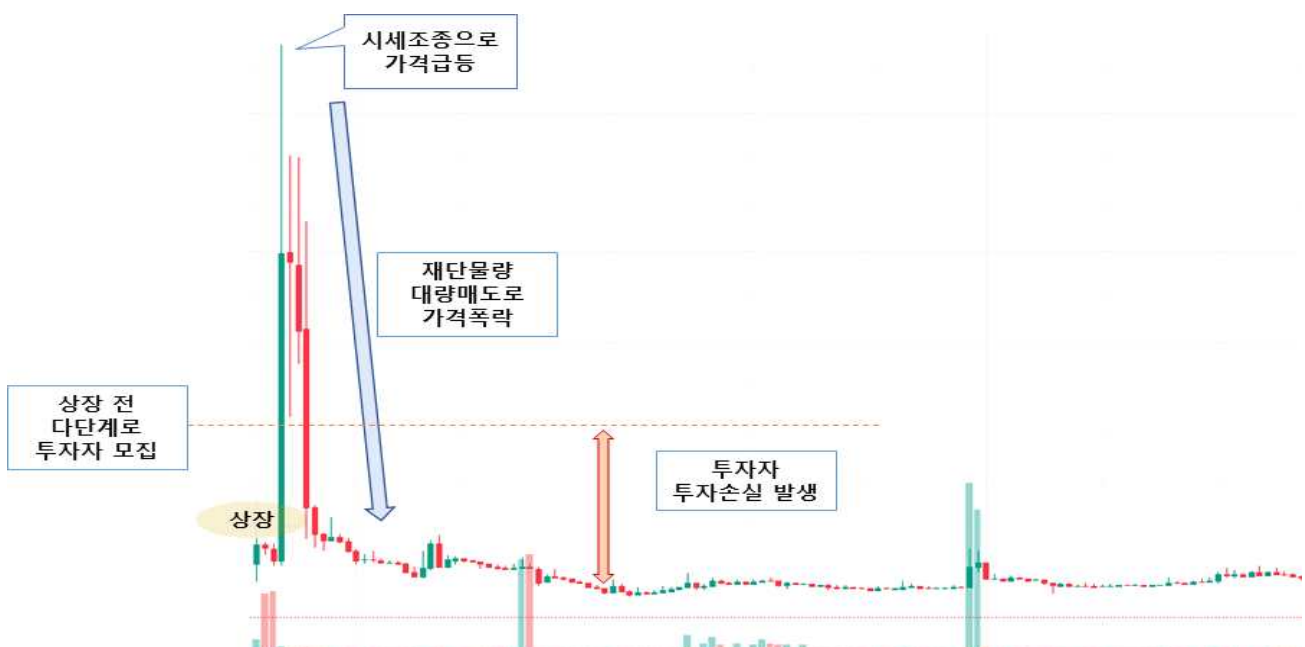
-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재단 관련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



- 재단 관련자들의 대량 매도로 가격이 폭락하여 투자 손실 발생

시세조종 후 재단물량 매도로 투자손실 발생 사례

D씨는 E업체로부터 우량코인을 예치하면,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한 F코인으로 100일동안 총투자금의 100%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하였다. 하지만 30원에 상장되어 5,000원까지 급등했던 F코인은 D씨가 이자로 지급받자마자 1주일 만에 500원으로 급락하였고 원금상환조차 받지 못했다.



③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

- 본인을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직원이라고 하며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므로 낮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권유*

*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상장 계약서를 위조하여 투자자에게 제시

- 동 가상자산이 투자금의 3배가 되지 않을 경우 재단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를 현혹

- 가상자산 매수를 위해 현금을 입금하면 투자자 명의 허위 전자 지갑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킴

- 상장 일정이 계속 연기되었다고 하면서 이후 자금을 편취

수익보장각서와 허위 전자지갑으로 투자자 유인

지 급 보 증 서

채권자성명: (서명)
보증금액: 500,000 원 (1250코인)
보증기간:

(주) 재단은 위 금액을 보증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이행 할 것을 약속한다.

1) 20 년 월 일 COIN의 LOCK UP 해제 후 일 거래가가 완충에 상한 없어, 1코인당 한화(원)로 2,250원이 되지 않을 시, 1코인당 2,250원으로 계산하여 위 채권자 에게 한화(원)로 지급한다.

2) 20 년 월 일 COIN LOCK UP 해제 후 일 거래가가 완충에 상한 없어, 1코인당 한화(원)로 2,250원 이상일 시, 모든 금액은 위 채권자 의 소용도 결정하여,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.

3) 보증기간은 LOCK UP 해제 이후로부터 30일이며, 보증기간 경과 후 채권자 으로부터 보증채무에 이행질구가 없을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.

20 년 월 일

(주) 재단 대표이사 (인)
공 증 인 가 대표자 (인)
발 주 별 인

<수익보장 지급보증서>

거래량 7,721 거래대금 16,307,587

① 자산보유현황

422,396.40 KRW

100% ETH 0%

공지사항
 WALLET 서브스 오픈

보관
 200.0000
=422,396 KRW

ETH 0.0000 ETH
=0 KRW

주인명 지갑 비밀번호 더보기

<허위 전자 지갑>

④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

- 불법 리딩방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 목적으로 국내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으로 무상 지급하겠다고* 유인

* 자체 제작한 허위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꾸밈



-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을 사칭하여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입금 요구



-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편취하거나, 취득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추가 피해 발생

⑤ 유명 업체 사칭 NFT 피싱사기

-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유명 업체(항공사, 커피전문점 등)에서 발행한 NFT(대체 불가능 토큰)를 무상 지급(프리 민팅, 에어드랍)한다고 유인



- NFT를 받기 위해서 이메일로 송부한 URL 주소를 클릭하여 가상자산 전자지갑 주소를 연결하라고 함



- 지갑이 연결되면 해킹으로 지갑 내 보유 가상자산을 전부 탈취

⑥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허위 광고

- 가상자산 또는 재단 명칭을 마치 국내·외 유명업체명과 유사하게 만들어 해당 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인 것처럼 허위 광고



- 유튜브, 페이스북 등 SNS, 투자설명회,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 권유



- 해당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한 업체는 본인 물량을 투자자에게 직접 넘기거나 시장에 고가에 매도하여 수익실현



- 해당 가상자산이 유명 업체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격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손실 발생

Ⅲ. 소비자 유의사항

① **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**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**현혹되지 마세요**

- ‘프라이빗 세일’이라며 **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**을 ‘저렴한 가격, 특별 가격’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
 - 가상자산거래소에 **상장되기 전까지**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우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음을 명심
 - 국내 거래소에 **상장 절차가 진행 중**이라며,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함
- ☞ ‘24.7월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」 시행 이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자에게 벌칙(1년이상 유기징역)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

② **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**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**더 큰 손실**을 볼 수 있습니다

- **거래 제한 조건**(락업)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가상자산 매도를 금지하는 경우 가격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여 예기치 못한 손실 야기
- 발행재단 등에서 락업 기간을 일방적으로 계속 연장하는 경우 투자금 전부를 손실 볼 수도 있으므로 유의

③ **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**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**가격이 크게 변동**할 수 있어 **가격이 급락**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

- **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**은 소수의 거래만으로도 쉽게 시세가 바뀔 수 있어 현재 시장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하기 어려움
 - 이른바 ‘마켓메이킹(MM)’ 업체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거래하여 마치 거래가 **성황인 것처럼**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
- ☞ ‘24.7월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」 시행 이후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킨 자에게 벌칙(1년이상 유기징역)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

4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

-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별적으로 특정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거나, 가상자산 인출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요구하지 않음
- 가상자산사업자 명함 등을 위조하여 직원을 사칭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가상사업자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할 필요
- ☞ "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"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(kofiu.go.kr)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('23.7.31. 기준 총 36개사)

5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

- 사기 업체들은 허위의 전자지갑 앱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
- 가상자산 무상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전자지갑을 연결시킨 후 해킹하여 재산을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함

6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

-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 금지
- 자신이 투자하려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를 본인이 직접 꼼꼼히 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필요